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9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복기왕 · 김현정 · 박용갑
민병덕 · 김기표 · 남인순
염태영 · 이인영 · 정준호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2회”를 “1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생략)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u>2회</u>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 6. (생략) ③ ~ ⑦ (생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1회</u> ----- ----- -----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